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50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5023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2. 10 선고 2018가단44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권숙권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준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1. 25.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2. 10. 선고 2018가단44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276,059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의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의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제5쪽 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2행의 “사용승낙서” 뒤에 “, 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과 원고가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남 산청군 P리(이하 ‘P리’라고만 한다) H 임야 및 Q 대지 중 분할하기로 한 부분의 면적이 661㎡로 동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양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와 H 임야 및 Q 대지의 면적당 가액이 다르다면 교환하기로 한 토지들의 면적이 일치한다고 양 토지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H 임야 및 Q 대지 중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을 하고자

하였던 부분의 위치 및 형상에 비추어 볼 때, 분할 후 남은 나머지 토지의 이용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20,000,000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와 H 임야 및 Q 대지 중 분할하기로 한 부분의 면적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용승낙서에서 피고는 '2017. 9. 20.부터 661㎡(토지와 진입로) 등기부등본 등재 시까지' 원고의 H 임야 및 Q 대지 중 일부 부분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위 '등기부등본 등재 시까지'의 의미는 측량 분할 후 661㎡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때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H 임야 및 Q 대지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용승낙서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 ·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 ·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분할 측량을 마친 후 원고에게 H 임야 및 Q 대지 중 661㎡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승낙서상의 '등기부등본 등재 시까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민희, 판사 김민정, 판사 서경원